

##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4. 2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4. 3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4. 1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김성호)

#### 가. 제안이유

○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별표]를 적용토록 함(안 제4조)
-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 현행 :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
  - 개정 :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동조례 개정으로 달라진 주요 내용은?	○ 하수도 점용료 산정이 종전 월액에서 연액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바뀌는 사항임.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4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하수도법 제2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관련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골자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배수설비의 구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별표]를 적용토록 함(안 제4조)
- 행정편의로 처리하던 점용료 산정을 시민편의로 변경(안 제20조제2항)
  - 현행 :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산정
  - 개정 :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일액으로 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1. 우수만을 배제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단일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일부를 배제하여야 할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제4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배수인구 (명)	150 이하	300 이하	600 이하	601 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250 이상					
<p>2.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나 우수와 오수를 같이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내경 또는 내폭은 다음 표에 의한다. 다만, 우수만을 배제하는 배수관 또는 배수거로서 연장이 3미터 미만인 것의 내경 또는 내폭은 7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p>									
배수면적 (㎡)	200 미만	600 미만	1200 미만	1200 이상					
내경 또는 내폭(mm)	100 이상	150 이상	200 이상	좌기의 율로 내경 또는 내폭이나 개수를 증가시킨다.					
<p>3.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기점, 종점, 합류점, 굴곡점 및 내경 또는 내폭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가 직선인 부분에는 내경 또는 내폭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물받이를 설치하여야 한다.</p>									

4. 고형물질을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기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 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점용료) ①(생략)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 미만인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⑤(생략)

제20조(점용료) ①(현행과 같음)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③~⑤(현행과 같음)